



2018년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2018. 01.



하 동 군

목 차

○ 사회복지·보건분야	1
1.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신규 지급	1
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2
3. 저소득층 정부양곡 지원단가 변경	4
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단가변경	5
5.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단가 및 본인부담금 변경	6
6.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변경	7
7.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변경	8
8.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9
9.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변경	10
10.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11
11.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변경	14
1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16
13. 긴급지원 지원금액 상향	17
14.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20
15.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취급내역 전산보고 시행	21
16. 분만산부인과 개설	22
17.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24
○ 농림수산축산분야	25
1.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25
2. 가금 밀집지역 내 축사이전 시 지원	26
3.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27
4.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등록대상 확대	28
5.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29
6.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인상	30
7.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용자) 지원한도 상향	31

○ **지방세분야**32

1.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32
2. 육상양식 등 어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33
3. 임대사업자 주택 및 오피스텔 감면기준 개선 34
4.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인상 35
5.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36
6.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확대 37
7.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38
8. 지방세외수입금 채납자 명단공개 제도 도입 39
9.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 40
10.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 41

○ **일반행정분야**42

1.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강화 42
2.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확대 실시 43
3. 구재봉 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 개장 44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신규 지급

■ 추진배경

- 국가유공자 중 상이군경·독립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자격이 승계되어 연금 또는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지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미망인에게는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예우차원의 실질적인 보상 필요

■ 현 행

- 6.25 참전유공자 본인 : 월 200천원(도 100, 군 100)
- 월남참전유공자 및 전몰유족 : 월 100천원(군 100)

■ 달라지는 내용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신규신설 지급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의 미망인
 -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금액 : 월 50천원
 - 지원시기 : 2018. 1월부터

* 시 행 일 : 2018년 1월 2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복지기획담당(☎880-234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추진배경

- 저소득계층의 최저생활 보장

현 행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 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 2017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수급자 (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6	2,448,124
주거급여수급자 (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수급자 (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23,690	2,646,923	3,060,155

달라지는 내용

-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 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9	1,857,392
의료급여수급자 (중위소득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급여수급자 (중위소득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급여수급자 (중위소득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17. 11월부터 시행)

- (원칙)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 가구) 만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 장애인 1~3급
- (부양의무자 가구) ①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②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 등을 고려,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소득재산 하위 70% 수준 미적용)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복지기획담당(☎880-2342)

저소득층 정부양곡 지원단가 변경

추진배경

- 양곡관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고시하여 저소득층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양질의 정부양곡을 공급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

달라지는 내용

- 지원단가 : 농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90% 수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 지원
- 가구당 구매량 월 40kg으로 제한(가구원 1인당 10kg)

(단위: 원)

구 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신 곡 (17년산)	10Kg	16,54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94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340
	20Kg	32,7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9,51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410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복지기획담당(☎880-234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단가 변경

추진배경

- 장애인연금 지침 개정

달라지는 내용

구분	2017년	2018년
기초급여액	2017. 4월~2018. 3월 : 206,050원	(1-3월) : 206,050원 (4~8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인상 예정 (9~12월) : 250,000원
부가급여액	2017. 4월~2018. 3월 : 20,000원~286,050원	(1-3월) : 20,000~286,050원 (4~8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인상 예정 (9~12월) : 20,000~330,000원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880-221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단가 및 본인부담금 변경

추진배경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

달라지는 내용

- 활동보조 단가: 시간당 10,760원

구 분	활동보조 단가 (시간당 금액)		가산수당 (시간당 금액)	비고
	2017년	2018년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	9,240원	10,760원	680원	
② 22시 이후 6시이전 심야제공	13,860원	16,140원	1,020원	
③ 공휴일에 제공	13,860원	16,140원		

○ 기본급여 월한도액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기본급여	1,091	1,270	869	1,012	657	764	435	506
가산수당	1,171	1,350	933	1,076	705	813	467	538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 천원)

구분	본인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기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50%이하	6%	25,800	30,300	38,500	45,800	51,100	60,700	63,700	76,200
100%이하	9%	38,700	45,500	57,700	68,700	76,600	91,000	95,600	108,800
150%이하	12%	51,600	60,700	77,000	91,600	102,200	108,800	102,200	108,800
150%초과	15%	64,500	75,900	96,300	108,800	102,200	108,800	102,200	108,800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880-2212)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변경

■ 추진배경

-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단가 반영
- 이용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달라지는 내용

구분	2017년	2018년
서비스단가	활동보조: 9,240원 교육지원: 12,600원	활동보조: 10,760원 교육지원: 14,600원
월급여액	활동보조: 월 369,000원 (9,240원×40시간) 교육지원: 월 201,600원 (12,600원×16시간)	활동보조: 월 430,400원 (10,760원×40시간) 교육지원: 월 233,600원 (14,600원×16시간)
본인부담금	소득 기준에 따라 부담	무료
독거·준독거 추가지원	1등급(380점이상): 396,600원(40시간)	1등급(400점이상): 774,720원(72시간) 1등급(380점이상): 602,560원(56시간)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880-2212)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변경

추진배경

-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 변경으로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의 교체 발급 (2017.1.1.~2017.12.31.)
- 2018. 1. 1. 이후 기존표지 사용 차량 단속 통해 과태료(10만원) 부과

달라지는 내용

구분	2017년	2018년
표지명칭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 (주차표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불가)	장애인사용자자동차등표지 (자동차등표지)
모양	주차가능: 가로 직사각형 주차불가: 가로 직사각형	주차가능: 휠체어 형상화한 원형 주차불가: 현행 틀 유지
색상	본인용 주차가능: 노란색 보호자용주차가능: 노란색 주차불가: 초록색	본인용 주차가능: 노란색 보호자용 주차가능: 흰색 주차불가: 현행 유지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880-221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추진배경

-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인복지 증진

현 행

- 대 상 : 만 65세이상(주민등록기준)
- 요 건 :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4만원
- 기준연금액
 - 단독 및 부부1인 수급가구 : 20,000원 ~ 206,050원
 - 부부 2인 수급가구 : 40,000원 ~ 329,680원

달라지는 내용

- 선정기준액 변경
 - 단독가구 월 119만원 → 131만원
 - 부부가구 월 190.4만원 → 209.6만원
- 2018년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1953년 1월 ~ 12월생
 - 주민등록상 생일 이전 달에 신청
- 기준연금액 : '18년 1월 ~ 3월 : 2017년과 동일
'18년 4월 ~ '19년 3월 : '18년 3월 별도통지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노인복지담당(☎880-233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변경

추진배경

○ 서비스비용 단가 인상으로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

달라지는 내용

○ 노인돌봄 단가 인상

서비스 내용	근무일 유형	금액(원)		기준
		현행	변경	
방문서비스 · 단기가사 서비스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800	10,760	시간당 단가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0,540	16,14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단, 근로자의 날 포함)	10,540	16,140	
주간보호 서비스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9,400	32,280	일당, 9시간 기준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31,620	48,42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단, 근로자의 날 포함)	31,620	48,420	
치매가족 휴가지원서비스	근무일 유형 구분 없음	36,380	39,950	일당 단가

○ 단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서비스 유형 및 시간		2017년					2018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초과~ 중위소득 110% 미만	중위소득 110%이상~ 140% 미만	중위소득 140%이상~ 160%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중위소득 110% 미만	중위소득 110%이상~ 140% 미만	중위소득 140%이상~ 160% 이하
방문 · 주간	27시간 (9일)	무료	18,000원	37,000원	42,000원	48,000원	무료	18,000원	37,000원	52,000원	66,000원
	36시간 (12일)	8,280원	24,000원	49,000원	56,000원	64,000원	8,280원	24,000원	49,000원	70,000원	88,000원
단기 가사	24시간 (1개월)	무료	16,000원	33,000원	38,000원	42,000원	무료	16,000원	33,000원	46,000원	59,000원
	48시간 (2개월)	무료	32,000원	66,000원	76,000원	84,000원	무료	32,000원	66,000원	92,000원	118,000원
치매 가족 휴가지원 서비스	연6일 범위내	무료	(일)2,500원	(일)5,100원	(일)5,800원	(일)6,500원	무료	(일)2,500원	(일)5,100원	(일)5,800원	(일)6,500원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노인복지담당(☎880-2332)

아이돌봄 자원사업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 추진배경

- 지침개정, 소득 변동에 따라 매년 정부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정부지원 유형 점검

■ 현 행

- 서비스 이용요금 : ('17) 6,500원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시간제 ('17) 25~75% , 영아종일제 ('17) 30~70%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 연 480시간

■ 달라지는 내용

- 기존 정부지원 이용자
 - '18. 1월말까지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해 소득재판정 신청
 - (시간제)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 후에는 변경된 등급이 적용되며 기존 서비스 이용 신청은 반려되며 서비스 재신청 필요

< (예시)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 일에 따른 이용자 유불리 >

소득유형	소득 재판정 신청일	결정정보 전송일	이용자 유불리	비고
가형->나형	1.5.	1.15.	불리	1.15.부터 나형으로 서비스
		1.30.	유리	1.30.부터 나형으로 서비스
나형->가형	1.5.	1.15.	유리	1.15.부터 가형으로 서비스
		1.30.	불리	1.30.부터 가형으로 서비스

사회복지보건분야

- (영아종일제) 변경된 소득판정 유형은 2. 1.부터 적용
- '18. 1월말까지 정부지원 유형 결정(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 1.부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정부 미지원으로 일괄 변경

○ 2018년 신규 신청자

- (시간제) 결정 정보 전송일에 급여 개시
- (영아종일제) 익월 1일 급여 개시
- 정부지원 변경 시(시간제↔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보육료 등 영유아복지↔영아종일제) 익월 1일 급여 개시
- * 정부 미지원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참고1 2018년 아이돌봄 지침 주요개정사항

-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 : 7,800원
 - *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7) 6,500원 → ('18) 7,800원(20.0%)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5%p) 조정
 - * 시간제 ('17) 25~75% → ('18) 30~80%, 영아종일제 ('17) 30~70% → ('18) 35~75%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연 480시간 → 연 600시간)
 - * (예) 월 20일 기준: ('17) 일 2시간(연 480시간) → ('18) 일 2.5시간 이용(연 600시간)

< 2018년 정부지원 대상 범위 >

유형	소득 기준	시간제(시간당 7.8천원)				영아종일제 (월 156만원) 0~2세	
		A형		B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인 가구 기준 2,712천원)	6,240원	1,560원	5,460원	2,340원	117만원	39만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4인 가구 기준 3,841천원)	3,900원	3,900원	-	7,800원	85.8만원	70.2만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5,423천원)	2,340원	5,460원	-	7,800원	54.6만원	101.4만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7,800원	-	7,800원	-	156만원

* (A형) '11.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0.12.31. 이전 출생 아동

*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른 '18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에 의함

참고2 2018년 유형별 소득기준 변경사항

< '17년 및 '18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여성정책담당(☎ 880-2312)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변경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가정 생활 지원

변경사항

1.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구 분	변경사유	2018년 개정 사항
복지급여액 및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급여액 증액 및 아동지원연령 상향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한부모가족 ('17년) 아동양육비 월 12만원, 아동지원연령 만 13세미만 → ('18년) 아동양육비 월 13만원 아동지원연령 만 14세미만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한부모가족 ('17년) 아동양육비 월 17만원 → ('18년) 아동양육비 월 18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지원내용 ('17년) 학원등록비+교재비 등 → ('18년) 학원등록비+교재비+학용품비(54,100원) 등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대상 ('17년) 생계·의료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 → ('18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2.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조정

○ 2018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8년 기준 중위소득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52%	1,480,490	1,915,238	2,349,985	2,784,732	3,219,480
	기준 중위 소득 60%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기준 중위 소득 72%	2,049,910	2,651,868	3,253,825	3,855,783	4,457,741

3. 신청 및 선정기준 변경

구 분	개정사유	2018년 개정 사항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보장 대상가구 자녀연령 구체화	<input type="checkbox"/>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대상가구 ('17년) 만 18세 이상의 취·창업자녀가 있는 지원대상 가구 ('18년)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자녀가 있 는 지원대상 가구
	적용기한 등 보장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적용기한 확대 ('17년) 3년 이내 → ('18년) 고등학교 진학지는 졸업 후 최대 7년, 대학 진학지는 졸업 후 최대 5년 ※ 단, 일학습병행제 참여 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 반고 직업계학과 재학생 현장실습 시 고등학교 및 대학 교 재학생도 해당 시점부터 적용 가능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여성정책담당 (☎880-231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 추진배경

-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현 행

- 문화누리 카드 지원액 : 1인당 연 6만원

■ 달라지는 내용

- 문화누리 카드 지원액 인상 : 1인당 연 7만원
- 문화누리카드 디자인 변경(일반카드와 동일하게 제작)

* 시 행 일 : 2018년 2월 1일

* 관련부서 : 문화관광실 문화예술담당 (☎ 880-2364)

긴급지원 지원금액 상황

추진배경

- 18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긴급지원 지원금액을 증액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함

현행

- 생계지원금액

(원/월)

가구구성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428,000	728,800	943,000	1,157,000	1,371,000	1,585,000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한도 지원액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29,000	903,800	1,169,400	1,433,900	1,699,500	1,965,000

-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19,100	348,700	427,3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사회복지보건분야

○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4,900	600,000	750,000	500,000

달라지는 내용

○ 생계지원금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7	428,000	728,800	943,000	1,157,000	1,371,000	1,585,000
2018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1,603,400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한도 지원액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7	529,000	903,800	1,169,400	1,433,900	1,699,500	1,965,000
2018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17	219,100	348,700	427,3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2018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2017	94,900	600,000	750,000	500,000
2018	96,000	600,000	750,000	500,000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희망복지지원담당 (☎880-2322)**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 현 행

- 「장애인복지법」에 한하여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인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

■ 달라지는 내용

- 「장애인복지법」 이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국가가 장애(장해)등급을 받은 경우로 확대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함
-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피해 보상 기준」 고시 추진 중 (행정예고 진행)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관련부서 :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 880-6661)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취급내역 전산보고 시행

■ 추진배경

-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 차단 등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하여 '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내역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무보고 제도 전면 시행

■ 현 행

- 마약류 취급내역을(수기)관리대장으로 기록·보관하고, 일부 사항은 10일 또는 월1회 보고

■ 달라지는 내용

-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 소 취급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입력 보고하거나, 취급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연계하여 취급정보를 온라인 전송 보고

* 시 행 일 : 2018년 5월 18일

* 관련부서 :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 880-6661)

분만산부인과 개설

추진배경

- 하동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출산장려 정책의 적극 추진 필요
- 산부인과 진료 병·의원이 없는 여성의료 취약지역
 - 임신부터 출산까지 산부인과에 약 12~13회 이상 진료 필요.
 - 분만이 가능한 인근지역(광양시, 진주시 등)으로 원거리(1시간 이상) 이동 진료 및 출산
- 분만취약지 →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발생 해결
 - 산전 진찰 때마다 원거리 이동, 도시 원정 출산 등 산모와 가족의 시간적, 체력적, 경제적 부담
 - 지역내 산부인과 개설 필요 요구와 사회 취약 및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 ⇒ 농촌지역 여성의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 사업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현 행

- 분만취약지역에 외래산부인과 개원(2015. 6월)
 - 2015년 분만취약지 지원 선정사업에 공모(보건복지부)
 - 산부인과 진료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규모 257m², 초음파기외 24종)
 - 2016년 외래산부인과의 효율적 운영 및 정착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의로 방향전환 모색

사회복지·보건분야

- 분만산부인과 설치 사업공모 및 선정 : 2017. 3월
- 시설공사 시행 : 2018. 1월 ~ 3월

달라지는 내용

- 분만시설이 갖추어진 분만산부인과 개원 예정 : 2018년 4월

<분만산부인과 시설개요>

- 의료기관 : 하동여성산부인과(원장 한성천)
- 지원내용 : 시설장비비 900백만원(국비450, 도비 225, 군비225)
 - 2018년부터 매년 운영비 5억
- 사업규모 : 1개소 635.72m²
 - 시설 : 진료실, 처치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포함
 - 장비 : 정밀초음파 검사기외 19종 27점
- 위 치 : 하동읍 중앙로 11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1,2층)

* 시 행 일 : 2018. 4월

* 관련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 880-6643)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 추진배경

- 100대 국정과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대통령지시, 2017.6.2.)
- 노인인구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
- 지역여건에 맞는 치매극복정책 추진 차별화 및 전문성 필요

■ 현 행

- 통합건강증진사업 7개 사업 중 하나로 치매사업 영역 한정적
- 조기검진, 치료관리비 지원 및 예방중심으로 사업진행

■ 달라지는 내용

- 치매안심센터 신축으로 등록, 상담, 검진, 예방, 지원, 홍보 등 치매 통합서비스제공
- 쉼터(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 주5일 3시간이상
- 검진사업 확대 : 일반검진 및 고위험군 집중검진으로 검진 세분화, 검진영역 확대
-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카페 설치 등 가족상담 지원프로그램 확대
- 타 기관과의 연계서비스 확대

* 시 행 일 : 2018. 12월

* 관련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880-6675)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추진배경

-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농가의 적정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인증종류별·품목별 차등인상
- 유기농업의 지속추진과 환경보전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기한(3년)도 폐지 계획

달라지는 내용

<2018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기준>

- 추진배경 :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
- 주요내용
 - ① 직불금 단가 인상(만원/ha) : 논 +10, 채소·특작·기타 +10, 과수 +20

'17년				'18년	
논	유기	60만원/ha	⇒	유기	70
	무농약	40만원/ha		무농약	50
밭	유기	120만원/ha	⇒	채소·특작·기타	130
				과수	140
	무농약	100만원/ha		채소·특작·기타	110
				과수	120

- ②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3년)을 폐지하여 계속 지급 가능

* 시행일 : 2018년 1월

* 관련부서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880-2673)

가금 밀집지역 내 축사 이전 시 지원

추진배경

-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에 AI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대규모 피해와 재정투입 방지

주요 내용

- 가금 밀집·방역 취약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이전 시 축사 신축 등 지원
 - 지원조건 : 국가보조 40%, 지방비 보조 40%, 자부담 20%
- 의무사항 : 가금농가는 안전지역(가금농가 간 거리 500m 및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초과하는 지역으로 이전)
 - 강화된 축산업 허가기준 및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 방역중점관리지구에 적용되는 엄격한 방역기준을 준수
 - 기존 축사는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축사 재건축 금지

< 추진 계획 >

- 시·군·구에서 가금 밀집지역 내에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개편 계획 수립
- 농식품부에서 사업대상 지역 선정, 밀집지역 내 농가 지원

* 시 행 일 : 2018년 1월

* 관련부서 : 농축산과 축산경영담당

(☎ 880-2434)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 추진배경

- 동물보호법 개정(2017. 3. 21.)에 따라 2018. 3. 22.부터 신설 영업(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현 행

- 기존 반려동물 관련 영업 :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 미허가·미신고시 1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주요 내용

- 동물전시업(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호텔,유치원,훈련원 등), 미용업, 동물운송업(동물택시 등) 4개 업종 추가, 신설영업은 등록제로 운영
 -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을 갖춘 후 지자체에 등록
- 동물생산업은 신고제 → 허가제 전환
 - 법 시행 이전 동물생산업 신고를 마친 업체는 2020. 3. 22.까지 법에 따른 요건 구비
- 미허가·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시 행 일 : 2018년 3월 22일

* 관련부서 :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

(☎ 880-2438)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 추진배경

-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확대

■ 현 행

- 기존등록대상
 -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조사료, 가축분뇨, 퇴비, 왕겨, 톱밥, 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 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주요 내용

-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우려 차량에 대해서도 GPS 장착대상 차량으로 추가
 - 추가대상 :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 음식물(사료) 운반, 가금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

* 시 행 일 : 2018년 7월

* 관련부서 :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

(☎ 880-2435)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추진배경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 논 타작물 재배목표 : 275ha

-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 지원자격 및 요건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최소 1,000m²이상)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전환 면적을 최소 1,000m²이상 유지(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m²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

■ 지원단가

- 조사료 400만원/ha, 두류 280만원/ha, 일반작물 340만원/ha

* 시 행 일 : 2018. 1. 1

* 관련부서 : 농업소득과 식량작물담당

(☎ 880-2421)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인상

■ 추진배경

-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지원하여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 도모

■ 현 행

-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55만원씩 지원

■ 달라지는 내용

-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만원 인상 지원

※('12~16년)어가당 50만원/연 → ('17)55만원 → ('18)60만원 → ('19)65만원 → ('20)70만원

* 시 행 일 : 2018. 1. 1

* 관련부서 : 경제수산과 해양개발담당(☎ 880-2443)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지원한도 상향

■ 추진배경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어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해주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능한 미래 수산전문인력 양성

■ 현 행

- '17년까지 단계별 지원한도(기 대출액 차감)는 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

■ 달라지는 내용

- '18년부터 단계별 지원한도(기 대출액 차감)는 어업인후계자 2억원, 전업경영인 2.5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으로 상향

* 시 행 일 : 2018. 1. 1

* 관련부서 : 경제수산과 해양개발담당(☎ 880-2443)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 254-375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배경

- 지역아동센터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용료를 받지 않으며, 수혜자의 대부분이 저소득 계층이라는 점에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제지원 혜택 신설

현 행

- <신설>

달라지는 내용

-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감면기간 : 2018. 1. 1 ~ 2020. 12. 31

* 관련부서 : 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880-2273~2277)

육상양식 등 어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추진배경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50%를 감면받지만, 자영어민의 어업용 부동산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어 감면대상에 추가

달라지는 내용

- 자영어민 취득세 감면대상 신설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어민 어업권 및 어선 취득세 50% 감면 ※ 20톤 미만 어선 : 10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어민 어업권 및 어선 취득세 50% 감면 ※ 20톤 미만 어선 : 100% 감면 ▸ (신설) 어업용 부동산

❖ “어업용 부동산”이란?

- 부동산 :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내수면 양식을 위한 수조
- 용 도 : ① 육상해수양식어업, ② 육상양식어업
③ 육상 수조식(水槽式) 및 축제식(築堤式) 수산증자생산업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관련부서 : 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880-2273~2277)

임대사업자 주택 및 오피스텔 감면기준 개선

추진배경

- 재산세 감면대상 임대용 주택 감면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달라지는 내용

- 임대주택 취득기준 완화

종 전	▶	개 정
· 임대용 주택 및 오피스텔을 각각 2세대 이상 보유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주거용)을 각각 1세대씩 보유하여 2세대가 되는 경우

- 감면요건 :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공동주택, 오피스텔(주거용)을 합하여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감면내용

전용면적	재산세 감면
40㎡ 이하 30년 이상임대목적 공동주택	100%
60㎡ 이하임대목적 주택 또는 오피스텔	50%
85㎡ 이하임대목적 주택 또는 오피스텔	25%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관련부서 : 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880-2273~2277)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인상

추진배경

- 일반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하여 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달라지는 내용

- 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

※ 관련 지방세

구분	총 전	개 정
담배소비세	528원	897원
지방교육세	232원	395원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관련부서 : 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880-2273~2277)

참고 | 「지방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추진배경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개선

달라지는 내용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
-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42%로 인상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1억5천만원~3억원	38%
5억원 초과	40%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관련부서 : 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880-2273~2277)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확대

추진배경

-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통하여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달라지는 내용

- 창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75% ▸ 등록면허세 100% ▸ 재산세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75% ▸ 등록면허세 100% ▸ 재산세(3년간 100%, 2년간 50%)
▸ 일몰기한 : 2017년 12월 31일	▸ 일몰기한 : 2020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하고, 재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에는 5년간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3년간은 전액 면제한 뒤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관련부서 : 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880-2273~227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추진배경

- 체납세액에 대한 자진납세 유도 및 효율적 징수권 확보

주요내용

- 공개대상 체납액 하향 조정

종 전	개 정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 관련부서 : 재정관리과 체납관리담당 (☎ 880-2298~2299)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준조세 성격이 강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 도입
- 국민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 후 1년 이상 체납자부터 적용

■ 주요내용

- (개념)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영업소 등)과 체납액을 언론,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하여 납부를 촉진하는 간접강제 수단
- (대상)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자
 - ※ 기준금액 : 시·도 기준 “지방세외수입금” 1천만원 이상 체납
- (공개방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지방세기본법」 §147조)
- (공개방식) 위택스, 언론, 행안부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등

➔ 다만 '18년 공개대상자가 극히 소수인 경우는 통합공개 실익 및 자치단체별 개별공개 실시 여부를 추후 세부적으로 검토 예정

* 최종 공개대상자 시·도 전송 및 위택스 연계 : 2018년 10월 중
* 관련부서 : 재정관리과 체납관리담당 (☎ 880-2298~2299)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

■ 추진배경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

■ 현 행

- 적용기한('17.12.31.), 감면한도 200만원

■ 달라지는 내용

- 적용기한('20.12.31.), 감면한도 300만원
- '18.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시 행 일 : 2018. 1.

* 관련부서 :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880-2568)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

■ 추진배경

-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권고하기 위함.

■ 개 요

- 사업기간 : 2018. 3. ~ 12.
- 지원기준 및 사업량
 - 지원기준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고된 경유차량 중 총중량 2.5톤 이상인 차량
 - 지원목표 : 50대
 - 지원금액 : 3,216천원/대

■ 추진현황 및 계획

- '18. 2. :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공포
- '18. 2. : 조기폐차 수요량 파악
- '18. 3. : 지원사업 추진

* 시 행 일 : 2018. 1.~2018. 12.

* 관련부서 :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880-2568)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강화

추진배경

- 잘못된 관습 폐지를 통한 악취 및 해충발생 방지

현 행

- 관리기준이 따로 없음

달라지는 내용

-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 다른 성별이 청소·보수 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

추진현황 및 계획

- 대상 : 수세식화장실 256개 (128개소×남·여)
- 조치계획 :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철거후 안내스티커 부착,
화장실 내 공동 휴지통 설치
 - 하동군 직접 조치 공중화장실(66개소)
: 주요관광지, 공원, 시장, 읍·면 공중화장실
 - 민간 및 공공기관 관리 공중화장실(62개소)
: 휴게소·체육시설·터미널·주유소·역·소방서 등 공중화장실
- ※ 민간 및 공공기관 관리 공중화장실(62개소)은 상반기 내에 조치토록 홍보·안내

* 시 행 일 : '18.1.1

* 관련부서 : 환경보호과 자원순환담당 (☎ 880-2586)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확대 실시

■ 추진배경

- 핵·생화학무기 등 북한의 공습 및 지진·화재로 인한 비상시 주민 대피 훈련 필요성 확대

■ 현 행

- 주민참여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연 2회 실시

■ 달라지는 내용

- 연 4회 확대 실시
-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 민방공 대피훈련 및 지진·화재 대피훈련 강화

* 시 행 일 : 연중

* 관련부서 : 안전총괄과 민방위담당 (☎ 880-2963)

구재봉 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 개장

■ 추진배경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개장

■ 시설현황

- 숙박시설 : 휴양관 1동, 숲속의 집 2동, 트리하우스 7동
- 산림레포츠 시설 : 에코에드벤처, 짚라인 등
- 목재문화체험관 : 제재소, 목공예실, 목재블럭놀이방 등
- 어린이 놀이터, 캐노피 투어 등

■ 달라지는 내용

-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3월 예정)
 - ※ 프로그램 내용 및 이용료 미정

* 시 행 일 : 2018. 3.

* 관련부서 : 산림녹지과 산림휴양담당 (☎ 880-2486)